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30251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소영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인
변 론 종 결 2020. 1. 9.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8. 10.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10. 8. 접수 제51183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1. 12.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2.부터 2016.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피고 C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11. 12.부터 2016. 12. 12.까지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4.경 원고로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3) 한편 보조참가인의 직원인 E은 2015. 2.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

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6. 10. 27.경 퇴사한 후 2016. 11. 16.경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나. 보험사고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E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 C이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조참가인은 2018. 9. 10.경 원고에게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1. 20.경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에 따라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C의 재산처분행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8. 10. 8.경 자신의 부인인 피고 D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10. 8. 접수 제51183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C의 무자력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8. 10. 8.경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부산진구 F 주민센터장, 보조참가인,

부산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구상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보

협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보조참가인의 직원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월 차임을 납부한 E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가사 당시 E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E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1. 20.경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나,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 한 달 전인 2018. 9. 10.경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원고가 2018. 11. 20.경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피고 D과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재산

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희진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 ,
, , , , , , , , ,
, , , , , , ,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스라브지붕 19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84.9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2933.10㎡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473.7㎡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86.5㎡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15.8㎡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6.6㎡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6㎡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7㎡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4㎡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5483.60㎡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 3182.50㎡

대지권 종류 : 9 소유권

대지권 비율 : 5483600분의 29678 끝.